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2025. 12.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2025. 12.



유의사항

- 본 안내서는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5년 10월 1일 시행, 법률 제21066호)』을 광고성 정보 전송자가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본 안내서의 판권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본 안내서를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또한, 이용·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 안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spam.kisa.or.kr>) 자료실에 게시됩니다.

제·개정 이력

순번	제·개정일	변경내용	발간팀	연락처
1	2014. 12	제정	스팸대응팀	118
2	2015. 09	개정	스팸대응팀	118
3	2016. 06	개정	스팸대응팀	118
4	2016. 12	개정	스팸대응팀	118
5	2017. 11	개정	스팸대응팀	118
6	2020. 07	개정	스팸정책팀	118
7	2024. 03	개정	스팸정책팀	118
8	2025. 12	개정	스팸정책팀	118

I. 개요

- 1. 불법스팸의 개념 및 불법스팸 방지의 필요성..... 6
- 2. 적용 범위 8

II.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적용범위10
- 2. 사전동의 의무 예외14
- 3. 수신거부 및 사전동의 철회17
- 4. 야간광고 전송제한 및 예외18
- 5. 광고성 정보 전송시 명시사항19
- 6. 광고성 정보 전송자 금지사항20
- 7.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비용 발생 금지22
- 8. 처리결과 통지23
- 9. 수신동의 여부 확인25
- 10. 광고전송 위탁28
- 1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거부 등29
- 12.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31
- 13.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32
- 14.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금지34
- 15. 법 위반 행위를 하도록 한 자35

III. 부록

- 1.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38
-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45
- 3.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46
- 4.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Q&A50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I

개요

1. 불법스팸의 개념 및 불법스팸 방지의 필요성
2. 적용 범위

I. 개요

1. 불법스팸의 개념 및 불법스팸 방지의 필요성

가. 개념

-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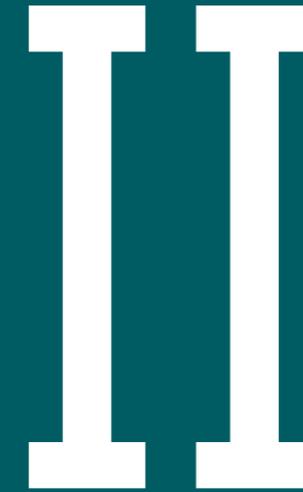
조항	주요 내용	비고	벌칙		
제50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는 광고전송 금지 예외 1: 재화 등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예외 2: 방문판매법에 따른 전화권유 	공통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신거부 및 사전동의 철회시 광고전송 금지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시~익일 8시” 광고전송 금지 			이메일 제외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성 정보 전송시 표기의무 준수 	공통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성 정보 전송시 금지 행위 수신거부 및 동의철회 회피 방해 수신자 연락처 자동 생성 수신자 연락처 자동 등록 전송자 정보 은폐·위변조 원링 스팸 			
	제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료 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 조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신거부 등 처리결과와 통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8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 확인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0조의4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서비스의 제공 거부 및 서비스 취약점 개선 등 필요한 조치 강구 의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0조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의 없는 광고 프로그램 설치 금지 	애드웨어 등			
제50조의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 동의 없는 광고 게시 금지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 예외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0조의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공통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나. 스팸 방지의 필요성

-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종이 문서로 된 광고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가 등장하며, 저렴한 비용 등 다양한 장점으로 정보통신망 기반의 광고 전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 전송의 범람과 그로 인한 국민의 불편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해 기존 옵트아웃 방식에서 2004년 전화와 팩스를 옵트인 방식으로 변경하고 2014년 이메일 등을 포함하여 모든 전자적 전송매체를 옵트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 광고를 수신하며, 이를 확인·삭제 하거나 수신을 거부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최근의 불법스팸은 짜증과 불편을 유발하는 성가신 마케팅에 그치지 않고, 불법도박, 불법대출 등 불법적인 재화나 서비스 사용을 유도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적 및 심리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금까지 스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및 기술적 방안을 고안하고 집행하여 왔지만, 스팸 전송 기법 역시 꾸준히 발달함에 따라 스팸 차단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광고성 정보는 전송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 관련 사업자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정부기관과 광고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협력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광고는 원활히 수신하고, 원치 않는 광고나 위협, 위법한 광고는 수신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2. 적용 범위

-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의 규정은 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광고성 정보 전송 등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규정은 이용자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기에, 규제의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광고성 정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송된 정보가 이용자의 사적영역을 침범하여 들어오는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즉,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휴대전화, 이메일과 같이 이용자의 사적영역에 해당하는 특정 매체로 이용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TV광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팝업광고 등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만,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해당 광고가 노출되는 곳으로 접근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 보게 되는 광고성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전송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적용범위
2. 사전동의 의무 예외
3. 수신거부 및 사전동의 철회
4. 야간광고 전송제한 및 예외
5. 광고성 정보 전송시 명시사항
6. 광고성 정보 전송자 금지사항
7.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비용 발생 금지
8. 처리결과 통지
9. 수신동의 여부 확인
10. 광고전송 위탁
1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거부 등
12.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13.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14.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금지
15. 법 위반 행위를 하도록 한 자

II.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적용범위

법률	<p>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p> <p>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p>
<p>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함</p>	

가. 누구든지

- “누구든지”란 상시적으로 영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라면 개인, 공공기관, 단체, 법인 등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제50조의 제한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수신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됩니다.
 -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 적용

나. 전자적 전송매체

-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적 형태로 정보의 전송이 가능한 모든 매체(유선전화, 휴대전화, 팩스, PC, 태블릿 PC 등 수신자가 보유하는 통신수단으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일체의 매체)를 의미합니다.
 - ※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13호는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란 전송자가 널리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전송자 등에 관한 정보,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이는 실제로 전송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영리목적”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별하는 기준인 “영리(이익을 그 구성원에게 배분하는지 여부)”와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 비영리법인이 전송하는 정보라 할지라도 정보의 성격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영리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가 아니더라도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정보가 전송자의 이미지 홍보에 해당하거나,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 ※ 신용카드 거래내역(결제)정보를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하단에 광고성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이메일 전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봅니다.

예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안부문자, 뉴스레터 등 수신자의 요청이 없거나, 계약상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수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제공한 쿠폰, 마일리지 등의 발급 소멸에 관한 정보(회원가입, 생일, 1주년 명목 등)
 - ※ 이때, 물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대금의 일정 비율을 부여하는 유상거래 기반의 ‘적립식 포인트’는 매매계약과 별도로 인정되는 채권으로써 소비자에게 소멸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내성 정보로 보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 또한, 이벤트 참여, 쿠폰 다운로드 등과 같이 이용자의 적극적인 행위에 따라 발급된 쿠폰 등에 대한 발급, 소멸 안내를 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이 경우에도 이용촉진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됨

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닌 정보

- 수신자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거부 하더라도 전송자와 수신자 간 계약이나 거래 관계로 인하여 전송자가 수신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 이러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전송자와 수신자 양자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수신자의 요청 또는 신청에 따라 전송하는 정보(견적서, 상품 카탈로그 등 계약체결을 위한 정보 및 경품,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
 - ※ 수신자의 요청 또는 신청에 따른 정보로 제한하며, 다른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포함되거나, 수신자의 추가 요청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
- 전송자와 수신자 간 체결한 계약이행 등에 관한 정보(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확인 및 보증사항, 변경사항, 안전·보안·업데이트 사항 등 계약 관련 고지가 필요한 정보)

- 전송자가 제공(판매)하는 서비스·재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오로지 공익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재화에 관한 정보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업 등이 무상으로 진행하는 공익활동 안내 정보(장학금 지급 등)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닌 정보(안내성 정보)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요청을 간단하게 추가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어 안내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 다만, 오로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수신 동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문자, 이메일, 팩스 등을 전송하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는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수신동의 요청 정보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닌 정보의 가시성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마. 전송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수신자의 사적 영역인 휴대전화, 이메일 등에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수신자가 웹사이트, 앱 등에 접속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게 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전송”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 명시적인 사전동의

- “명시적인 사전동의”란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시 추후 광고를 수신할 수 있다는 것과 전송자의 명칭, 광고성 정보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동의를 받을 때에는 이용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가 아닌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정보제공 동의, 혜택알림 동의, 마케팅 동의 등)로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용약관에 광고성 정보 수신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약관에 대해 동의를 받고 광고 수신동의로 갈음하는 것은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명시적인 사전 동의는 수신자의 적극적인 사전 의사표시를 요구하므로, 체크 박스에 “동의”를 “기본값(default)로 설정해 두었다면,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상 사전동의 방식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방식에 제한은 없지만, 전송자는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의 고도화와 함께 광고 수신에 대한 이용자의 의향을 충실히 반영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이용자가 수신을 희망하는 광고전송 매체를 선택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합니다.

※ 이 경우 이용자가 동의한 전송매체에 한해 전송이 가능하며, 이용자가 매체별로 광고 수신을 거부한 경우 해당 매체에 한해 수신거부가 적용됩니다.

예시 전송매체별 명시적 수신동의 예시

[법인명/서비스명]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십니까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거부
광고성 정보 수신 희망 매체	<input type="checkbox"/> 전화(음성) <input type="checkbox"/> 전화(문자) <input type="checkbox"/> 앱 푸시
	<input type="checkbox"/> SNS/메신저/플랫폼 (<input type="checkbox"/> 카카오톡, <input type="checkbox"/> OOO, <input type="checkbox"/> OOO ...)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FAX

- 1) 수신자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의 명시적인 수신동의 사실 입증을 위해 각 SNS/메신저/플랫폼 전송매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매체별로 선택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권장함
- 2) 또한, SNS/메신저/플랫폼 매체를 통해 음성광고를 하려는 경우, 음성광고 수신에 동의한다는 것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

- 스마트폰 앱(App) 이용자에게 앱 푸시(App Push) 알림 기능을 통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적용되므로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 법령상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과 개인정보 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동의)와 구분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는 전송자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므로 각 동의는 별개로 받아야 합니다.

-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7호

2. 사전동의의 의무 예외

법률	<p>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p> <p>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시행령	<p>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p> <p>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p>

거래관계가 있거나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경우 각 요건에 따라 사전동의를 없더라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가. 거래관계를 통한 사전동의의 의무 예외

대가를 지불한 거래관계를 통해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사업자가 거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사전동의의 의무 예외에 해당

-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한 거래관계가 실제로 존재해야 하며, 무상 증여, 단순문의, 회원가입 등은 거래 관계의 성립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원칙상 전송자는 수신자로부터 연락처를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 ※ 영업점을 인수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연락처가 포함된 고객명단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쇼핑물 및 배달앱 등의 운영자가 판매자 대신 구매자의 연락처를 수집하여 준 경우 직접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사업자의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이 종료된 날(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사전동의의 의무의 예외기간에 해당합니다.

※ 거래가 종료되지 않은 동안에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있는 경우에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종류의 재화등”이란 지난 거래관계에서 전송자가 처리하고 수신자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나 서비스 등을 의미합니다.

나. 전화권유판매를 통한 사전동의의 의무 예외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②육성으로 ③수신자의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경우 수신동의의 의무 예외에 해당

- “전화권유판매자”란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전화권유판매업자”)와 전화권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전화권유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화권유판매원”)를 말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제4호)

※ 판매계약이 전제되지 않고 단순히 광고만 하는 경우 또는 방문판매법 제3조에 따라 방문판매법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①사업자가 상행위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입하는 거래, ②금융상품판매업자와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 ③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가공되지 않은 농·수·축·임산물 및 직접생산한 재화등의 거래)에는 방문판매법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용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육성”이란 사전에 녹음한 ARS나 기계음이 아닌 상담원과 실시간 목소리로 직접 통화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따라서, 녹음된 상담원의 음성으로 최초 안내(ARS 등)가 된 이후, 상담원과 직접 통화를 하더라도 이는 육성 전화에 해당하지 않아, 이용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고지”란 전화권유판매자가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획득하였는지 안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는 광고성 정보 안내를 시작하기 전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동의의 의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수신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한다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전화권유판매자의 광고성 전화를 한 번에 수신거부 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https://www.donotcall.go.kr>)”에 등록된 경우, 전화권유판매자는 별도 수신동의 없이 전화권유판매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 소상공인 영업지원을 위한 광고성 정보알림서비스 사전 동의 의무 예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영업 지원과 이용자 정보 제공 등을 위해 광고성 정보알림서비스* 제공시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 사전 동의 의무 예외에 해당

* 가게(업체)에 예약이나 문자를 전화로 한 이용자(고객)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가게 정보(예약 내용, 영업 시간, 위치, 메뉴, 당일 이벤트 등)를 문자 메시지로 '자동' 발송하는 서비스

- 2028년 3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국가데이터처 고시)에 해당*하며 연매출액 10억 이하인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 G. 도매 및 소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아래 준수사항 및 정보통신망법 상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준수사항

1. 이용자가 가게 위치, 예약 등을 문의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전화를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이용자에게 광고성 정보를 발송한 이후에 이용자가 다시 해당 업장에 전화하더라도 7일 이내 (7X24시간=168시간)에는 광고성 정보를 발송 없습니다.
3.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송할 수 있는 최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문자는 일일 당 500건(콜백 서비스 외 사항들도 포함)으로 제한합니다.
4. 사업자는 광고성 정보 문자 발송시 법적 표기 의무 ('광고' 표기, 전송자 연락처, 수신거부 등)를 준수하여야 하며, 내용 하단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서비스"임을 명시 하여야 한다.

3. 수신거부 및 사전동의 철회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사전동의를 받았거나 사전동의 예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동의를 철회한 경우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 “제1항에도 불구하고”의 “제1항”이란 사전동의를 받았거나 사전동의 예외(거래 관계형성 등)에 해당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거래관계에 따른 사전동의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금지됩니다.
- 또한, 고객이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후 다시 거래관계가 발생한 경우, 새롭게 명시적인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수신자가 회원탈퇴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므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 수신거부 또는 사전동의 철회는 그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신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동의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때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 수신거부 및 사전동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모든 영역에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수신자가 전송 매체를 구분하여 수신동의를 하고 특정 매체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 해당 매체에 한정하여 사전동의 철회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이때 전송자가 수신자의 동의를 받을 당시와 다른 매체별 동의 철회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수신자의 동의 철회 의사표시를 어렵게 한다면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본사와 지사, 본사와 대리점에서 고객 정보를 공유할 경우 의사표시도 공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한 번의 동의 철회 또는 수신거부로 해당 본사 및 지사, 대리점에서 전송하는 광고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전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7호

4. 야간광고 전송제한 및 예외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②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았어도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한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각을 의미합니다. 국외에서 국내로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전자우편은 다른 매체에 비해 광고 수신확인의 즉시성이 떨어져 이용자의 통제가 비교적 용이하므로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수신자의 별도 동의가 없더라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 야간시간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7호

5. 광고성 정보 전송시 명시사항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③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전자우편, 팩시밀리, 휴대전화,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별로 1)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전송자의 명칭”은 수신자가 전송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체명, 서비스명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송자가 명시한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으로는 전송자를 식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전송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각 전송매체별 자세한 명시사항과 명시방법은 부록1 참조
- “전송자의 연락처”는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명시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다른 연락처를 재안내하거나, 또는 허위 연락처인 경우에는 연락처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수신의 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광고성 정보의 본문에 표기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전자우편, 앱 푸시 광고 수신거부시 웹사이트나 앱에 로그인하도록 하거나 전화를 통한 광고 수신거부 시 본인인증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전자적 전송매체(전자우편 제외)를 통해 광고성 정보 전송시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를 할 때 수신자에게 금전적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수신거부를 위한 전화번호 제공 시 “무료”와 같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을 안내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서 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8호

6. 광고성 정보 전송자 금지사항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행위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행위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행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 1)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행위,
- 2)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행위,
- 3) 전화번호 등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행위,
- 4) 수신자가 전송자를 알 수 없게 하는 행위,
- 5) 원링스팸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 이메일을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수신거부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예:페이지 오류로 나타나게 함), 문자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연락이 되지 않는 수신거부번호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본 규정은 적극적으로 “회피·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제50조 제4항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것과 구분됩니다.

나.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의 금지

-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자동으로 수신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 등의 연락처를 만들어 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 오토콜 프로그램이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전화를 걸거나, 액셀 프로그램 등으로 전화번호 일부 또는 전체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 광고성 정보의 전송 여부와 상관없이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됩니다.

다.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의 금지

-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란 고객에게 받은 연락처를 전산 상에 자동으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 혹은 정보저장장치 등에 있는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보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수집하여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행위

- 음성·문자·팩스 등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발신번호는 전송자를 확인할 수 없는 번호로 변작(변경, 조작 등)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이메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없게 하거나 다른 이메일 주소로 위·변조 하여서는 안됩니다.

마. 수신자를 속이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행위

- 벨이 1~2번 울린 후 수신자가 받기 전에 끊거나 받은 후 바로 끊는 방식으로 수신자의 전화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바. 벌칙

- 위 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4호

7.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비용 발생 금지

법률	<p>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p> <p>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시행령	<p>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p>

광고성 정보 수신자가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시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광고성 정보 전송자는 수신자가 금전적인 비용 부담없이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법(ex: 수신자 부담 080 착신과금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 각 전송매체별 자세한 명시사항과 명시방법은 부록1 참조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때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9호

8. 처리결과 통지

법률	<p>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p> <p>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신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 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p>
시행령	<p>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p> <p>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3. 처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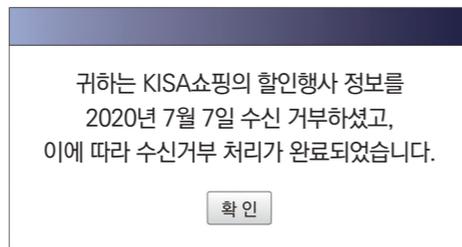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사전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함

- “14일 이내”란 해당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을 의미합니다.
 - ※ 예시) 5월 1일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5월 15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오프라인으로 수신동의를 한 경우 시스템 등록 기준이 아닌 수신동의 등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통지내용에는 ①전송자의 명칭, ②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 ③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④처리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예시) 귀하가 요청하신 OO의 (①전송자의 명칭)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가(②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 20**년 *월 *일(③해당의사를 표시한 날짜)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④처리 결과)
 - ※ 의사표시 날짜를 “금일” 또는 “오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차후에 해당 날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로 명시해야 합니다.
-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의 처리결과 통지 시 통지내용 외에 광고성 정보를 포함하여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 ※ 수신자가 휴대전화에 ‘광고’ 등을 차단문구로 지정하여 둔 경우, 전송자가 처리결과 통지에 ‘광고’를 포함하여 전송하게 되면 수신자에게 처리결과 통지를 수신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처리 결과의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 및 이메일 등 다수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 전송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연락처 변동 등으로 인해 수신자가 처리결과 통지를 확인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수신자가 동의한 모든 전송매체로 통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080번호로 수신거부 요청 시 즉시 처리하고 육성이나 ARS 등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용자가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 등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처리결과를 팝업창 등으로 통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문자로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나 “무료수신거부번호” 등을 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3항 제12호의3

9. 수신동의 여부 확인

법률	<p>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p> <p>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시행령	<p>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 확인 방식)</p> <p>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을 동의한 자에게 동의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안내해야 함

-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①전송자의 명칭, ②수신동의 날짜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 ③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함께 안내하여야 합니다.

※ 수신동의 날짜는 수신동의를 한 날짜를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수신동의를 한 특정 날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범위반에 해당합니다.

- 수신동의 여부 확인은 수신동의에 대한 의사 표시(동의 유지·철회)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신동의 유지 의사 표시방법을 안내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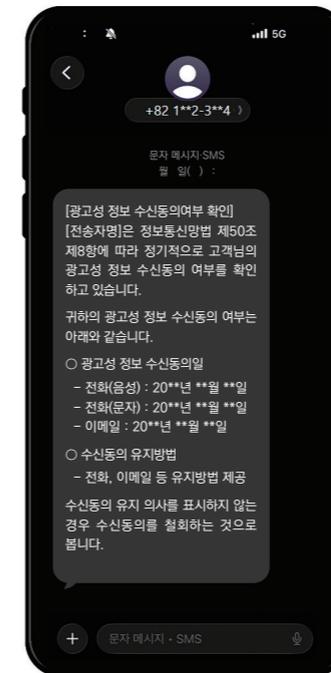
- 수신자가 수신동의 유지 의사를 표시할 기한을 설정하여 그 방법과 함께 안내하여 합니다.
- 수신자가 기한 내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수신동의 철회 의사 표시방법을 안내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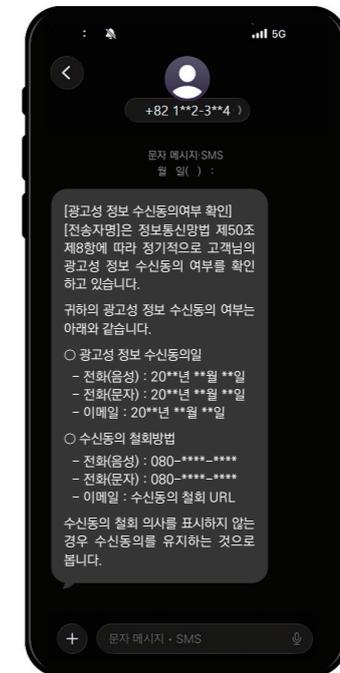
- 전송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기한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나, 의사 표시 즉시 철회 의사를 반영해야 합니다.
- 수신자가 수신동의 여부 안내를 받은 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신동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 수신동의 후 특정일에 상관없이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일 이전에 수신동의 사실을 안내하면 됩니다.
 - ※ 다음 수신동의 확인은 최초 수신동의 시점부터 2년마다 기산하면 됩니다(안내한 날부터 새로 기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수신동의 여부 확인이 가능하지만, 수신동의자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기 전까지는 해당 정보가 수신자에게 안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법령 등에 따라 수신 동의자의 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 되며,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 의무도 소멸됩니다.
- 이용자가 수신 동의와 수신동의 철회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수신동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수신동의 사실을 안내하면 됩니다.
- 서비스 약관 등에 따라 휴면회원이 일반회원으로 전환된 경우, 최근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면 즉시 수신동의 사실을 안내하고, 미경과 시에는 2년이 도래하기 전에 수신동의 사실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 복수의 전송매체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 하나의 전송매체를 통해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전송매체별 동의 날짜 및 사실을 모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 시 제공하는 수신동의 철회방법은 정보통신망 제50조 제4항제2호에서 정하는 쉬운 방법이어야 합니다.
 - ※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신거부 단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수신동의여부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제9호의2

예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여부 확인 문자메시지 예시



▲ 수신동의 유지 방법을 안내하는 경우



▲ 수신동의의 철회 방법을 안내하는 경우

10. 광고전송 위탁

법률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위탁한 자)가 타인(수탁자)에게 해당 업무를 맡긴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제50조)을 수탁자가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탁자에게도 배상책임이 있음

- “위탁한 자”란 광고성 정보의 전송 업무를 계약을 통해 타인에게 위탁한 자이며, 이때 위탁을 받은 타인이 “수탁자”가 됩니다.
- 위탁한 자는 수탁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손해발생시 배상책임도 있습니다. 이 법 제50조의3제2항에 근거해, 수탁자는 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서 간주하기에, 위수탁 계약서에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도, 영리목적성 광고를 전송받은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위탁자에게 1차적인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를 위탁한 자는 수탁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 전송될 광고문안의 작성이나 광고 수신 대상자의 선정 등과 같이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나 광고성 정보 전송 업무처리를 약정한 경우 등은 위탁에 해당합니다.
- 전송 프로그램 또는 플랫폼 제공 등 전송을 위한 환경만을 제공해 주는 경우에는 전송 위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거부 등

법률

제50조의4(정보 전송 의무 제공 등의 제한)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의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의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의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의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 사실을 그 의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의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 ①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시스템 등의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불법스팸이 전송되고 있는 경우에는 의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이용계약에 명시하여야 하며, 의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 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 ※ “전기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는 “이동통신사업자”, “유선전화사업자”,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제공 사업자”, “메신저, SNS 등 앱 서비스 제공자”, 그 외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등이 해당 됩니다.

-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있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치 않는 경우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의 거부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 제공 거부에 관한 사항이 그 서비스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 하는 경우 그 거부 사실을 서비스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 “지체 없이”라 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를 의미합니다.
- “필요한 조치”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가 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합니다.
 - ※ 역무제공 거부 및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 취약점 개선은 필요한 조치의 예시에 해당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스팸이 전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필요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역무제공을 거부하지 않거나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제9호의3

12.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법률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3조(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법 제50조의5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휴대인터넷·휴대전화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 등(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이 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정보처리장치에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악성 스크립트 및 Adware 등으로, 이 프로그램 설치로 인해 광고성 정보가 노출되도록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 (악성 스크립트) 특정 사이트가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 웹사이트를 접속하면 이 웹사이트에 프로그램 되어져 있던 Java Script나 Active-X Component들이 자동으로 접속자의 시스템에서 실행되어 웹 브라우저의 초기 시작페이지 및 컴퓨터의 부팅 시에 자동으로 시작되게 하는 레지스트리 키 값을 추가하거나 변경 프로그램
 - ※ (Adware) 일반적으로 웨어웨어 제작자가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가로 설치 이전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시작 페이지가 특정 사이트에 고정되거나 프로그램 사용시 사용자의 일부 정보(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상업 광고를 프로그램 중간에 삽입되게 하는 프로그램
- “정보처리장치”란 컴퓨터,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 사업자는 이용자의 컴퓨터 등에 광고성 정보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 방법 등이 안내된 상태에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프로그램 설치 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겠습니까?”에 대해 이용자가 “예”를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광고성 정보가 노출된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가 보이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10호

13.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법률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 한다.
-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를 표시하거나 사전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타인이 운영하는 카페나 블로그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고 하는 경우,

- 해당 게시판의 관리자나 운영자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 게시판의 관리자나 운영자가 게시 거부의를 표시하거나 동의를 철회한 경우 게시하면 안됨
- 위반 시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자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게시판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SNS 등 광고성 정보를 온라인 상에 게시할 수 있는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은 로그인이 불필요하거나 별도 인증과정 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곳을 말합니다.
-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광고성 정보의 게시를 동의하였더라도 이후에 거부하거나 동의 철회를 하는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면 안됩니다.
-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게시를 거부하거나 동의 철회의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를 표시하는 방법의 제한은 없습니다.

-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게시 거부의사는 메인화면 또는 해당 게시판의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알릴 수 있습니다.
- 거부 의사표시로 “광고글이나 남에게 피해가 되는 글들은 예고 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와 같은 문구도 거부대상 특정 및 거부 의사표현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대한 게시를 거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광고성 정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거나 거부 후 게시된 광고성 정보는 운영자나 관리자가 별도의 공지 없이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광고게시 동의를 받지 않거나 광고게시 거부의 의사표시 이후에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11호

14.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금지

법률	<p>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p> <p>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 마약, 불법대출, 도박, 성매매, 불법의약품, 청소년유해물, 불법 투자유도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는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재화 및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사의 서비스를 통해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 수신동의 및 표기의무 사항 준수와 상관없이 역무제공 거부(서비스 계약해지 등) 또는 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서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이 규정을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및 약사법 제61조 등
-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2호의2

15. 법 위반 행위를 하도록 한 자

법률	<p>제76조(과태료)</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p> <p>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p> <p>9.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p> <p>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p> <p>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p> <p>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p>
-----------	--

불법스팸 전송행위를 시킨 자도 전송자와 동일하게 처벌

-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란 영업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광고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 지원, 선동, 조장, 유도, 공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사업자가 자사 고객으로 하여금 고객의 지인에게 친구추천 등의 이벤트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는 경우 등
- 간접적인 지시나 요구 등의 행위 판단 기준으로는 ①해당 광고자의 마케팅 실적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 ②불법스팸을 전송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지속적으로 활용되도록 방치하거나 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③광고를 하게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 (객관적 정황 예시) 대리점들의 광고 패턴이 유사하여 본사가 대리점 등에 광고 패턴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경우 등
-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용자의 지인에게 이벤트 문자 등을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문자발송 환경 및 정보내용 등)을 제공하고 이벤트 문자를 전송한 고객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는 경우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 위반행위를 하도록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III

부 록

1.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3.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4.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Q&A

부록 1.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 정보통신망법 [별표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3항 관련)은 광고성 정보 전송자가 광고 전송시 전송매체별(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기타)로 명시해야 할 사항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제61조제3항 관련)

매체구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공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부호·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수신자가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전자우편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한다. 본문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송자의 명칭·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및 주소 전자우편 수신자가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p>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과 영문으로 명시해야 한다.</p>
모사전송	<o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 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 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성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의미하는 음성,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안내해야 한다.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음성 외의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광고)”의 표시 기준

-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 거부(필터링)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부호·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광/고), (광 고), (광.고), (“광고”), (대출광고), (廣告), (ad)와 같이 변칙 표기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전송자가 통신사업자, 수신자 등의 필터링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이나 특수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 광고성 정보의 표시의무사항을 이미지파일로 하여 전송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 수신자가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어렵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전자우편

가. 제목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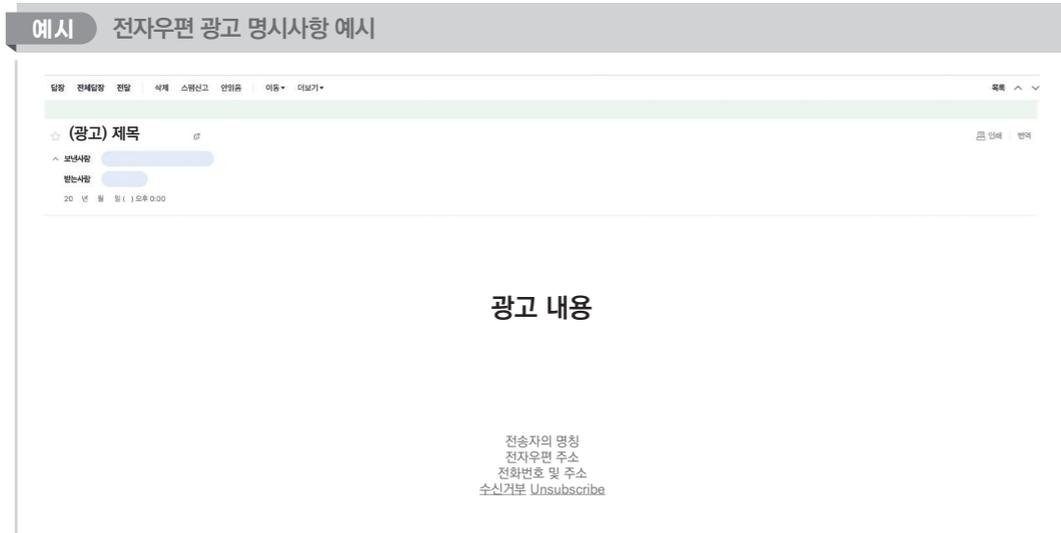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본문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 본문에는 전송자의 명칭·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및 주소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이메일 광고의 경우 발신 전자우편주소가 회신이 되어 수신 가능한 주소인 경우 본문에 전자우편주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수신자가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수신자가 본문 내에 “[수신거부]” 등을 눌러 곧바로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로그인을 요구하는 등 다른 정보를 요구하여 절차를 번거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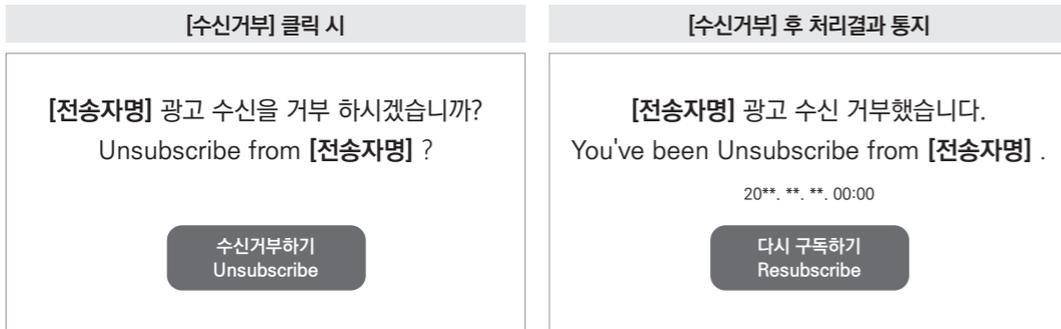
- 이러한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이 메일 화면에서 곧바로 수신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개인정보변경에서 E-mail 수신여부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do not wish to continue receiving updates from us please log-in and change your E-mail condition 'yes' to 'no' in the preference page)
 본 메일은 발신전용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은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 [수신거부] 링크 클릭 시 아래와 같이 즉시 수신거부 화면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클릭 시 로그인을 요구하는 등 수신자에게 연락처 외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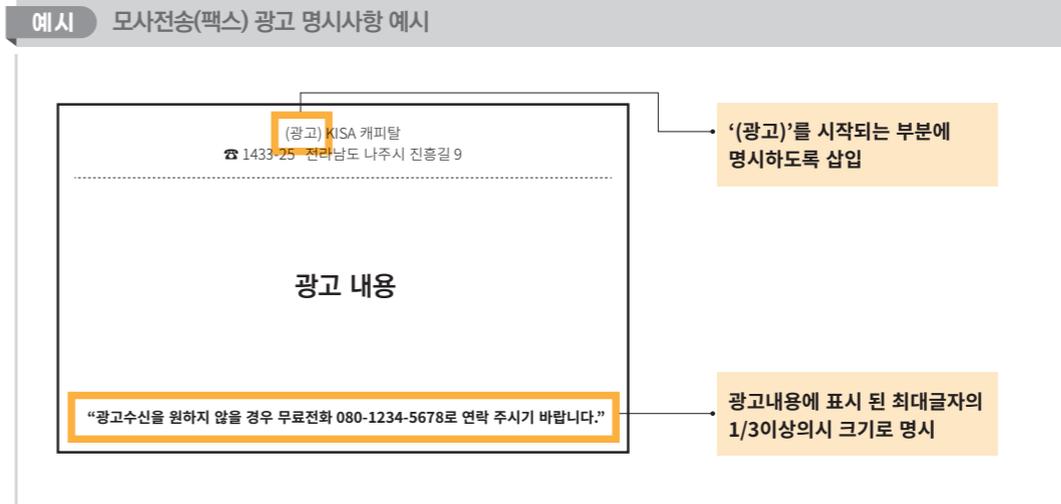
3. 모사전송(팩스)

가. “(광고)” 등 표시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광고)”, 전송자 명칭, 연락처 등은 광고 본문 내용이 나오기 전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방법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위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함께 명시하여야 합니다.



4. 음성형태로 전송되는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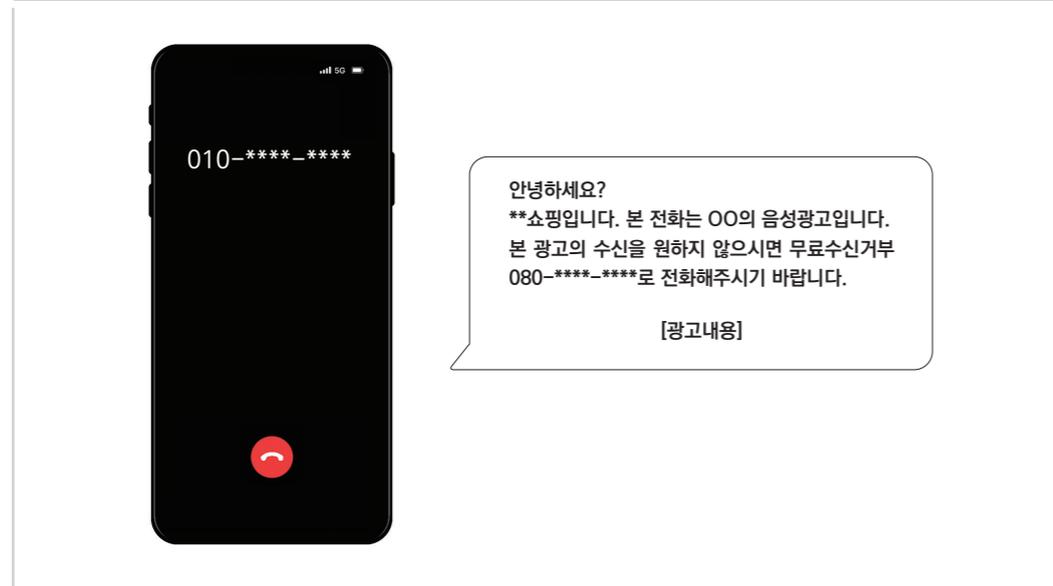
가. 광고의 안내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의미하는 음성,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 (광고, 전송자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 수신 거부 방법 등은 광고 본문 안내가 나오기 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나.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방법

-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같음하여 쉽게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함께 안내하여야 합니다.

예시 음성 광고 안내사항 예시



5. 음성 외의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

가. “(광고)” 등 표시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고, 수신자가 어디에서 발송된 광고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광고, 전송자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는 광고 본문 내용이 나오기 전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문자광고의 경우 연락처가 회신번호와 동일하고 통화버튼을 눌러 바로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연락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목과 본문을 구분하여 전송이 가능한 경우, 단말기 기종별로 제목과 본문이 분리되어 수신자가 광고임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광고)는 제목과 본문에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나.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방법

-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같음하여 쉽게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함께 명시하여야 합니다.
-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별표6에서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의 방식이 “무료”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메시지 광고 명시사항 예시



다. 앱 푸시 광고

- 앱 푸시 광고의 경우 전송자의 명칭이 앱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전송자의 명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전송자는 수신자가 쉽게 수신거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앱 푸시 광고를 전송할 때 아래와 같이 수신거부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 ※ 앱 푸시 광고 문구에 단순히 수신거부 경로(설정→수신거부)를 안내하거나 수신거부를 위해 로그인을 요구하는 것은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 광고성 정보 수신 설정 페이지에서 수신자가 편리하게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 거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전송자의 광고 전송매체를 모두 명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시 앱푸시 광고 명시사항 예시



부록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1. 형사처벌

위반 조항	처벌
제50조제5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0조의8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과태료

위반 조항	처벌
제50조제1항~제4항, 제6항, 제8항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의4제4항	
제50조의5	
제50조의7제1항, 제2항	
제50조제7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위반 조항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이상
제50조제1항~제4항, 제6항, 제8항 제50조의4제4항 제50조의5 제50조의7제1항, 제2항	750	1,500	3,000
제50조제7항	300	600	1,000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됨
-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기간을 계산함

부록 3.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처벌
<p>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p> <p>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취급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고지하고 전화 권유를 하는 경우 	<p>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p> <p>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과태료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p>	3천만원 이하 과태료
<p>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p>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p>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p>	3천만원 이하 과태료
<p>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자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p>③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 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p>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처벌
<p>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행위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만들어 내는 행위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행위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행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p>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 거부 및 수신동의의 철회용 무료 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 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 하여야 한다.</p>	3천만원 이하 과태료
<p>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신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 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p>	<p>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통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3. 처리 결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처벌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p>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p> <p>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매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3천만원 이하 과태료
<p>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p> <p>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p>	-	
<p>제50조의4(정보 전송 의무 제공 등의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의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의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의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의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 사실을 그 의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p> <p>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업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4항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처벌
<p>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p> <p>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p>		
<p>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p> <p>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 한다.</p> <p>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를 표시하거나 사전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p>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p>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록 4.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Q&A

0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01-01 고객에게 적립된 포인트(마일리지, 적립금) 소멸 안내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고객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을 이유로 고객이 명시적으로 신청한 적이 없는 쿠폰, 마일리지 등을 발급하고 이에 대한 발급, 소멸을 안내하는 정보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
- 또한,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잔여 쿠폰, 마일리지 등을 안내하는 것은 재화 및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 단, 거래계약 등으로 고객에게 제공된 포인트 등의 발급, 소멸을 안내하는 것은 전송자의 의무로서 고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의 예외인 안내성 정보 전송에 해당
- 위와 같이 고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수적인 안내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고객에게 부여된 다른 쿠폰, 마일리지 등(일방적으로 제공한 것 포함)의 정보를 함께 전송하는 것은 허용됨

ex) 구매의 대가로 발급된 적립금 5,000원에 대한 소멸 안내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생일축하 적립금 1,000원을 포함하여 6,000원 적립금 소멸을 함께 안내하는 것은 안내성 정보 전송에 해당하나,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쿠폰 및 마일리지 등의 소멸에 대한 사항만을 안내하는 것은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함

01-02 비영리 법인이 전송하는 정보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영리법인이나 영리목적의 사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
- 비영리 법인이 전송한다고 하더라도 재화 및 서비스 판매, 재화 및 서비스 판매 독려(마감시간 안내) 등의 정보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
- 따라서 비영리 법인이 전송하는 경우라도 수익을 얻기 위한 홍보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야 함
- “국회의원실 정책알림 문자”와 “호국원 참배관련 안내 문자” 등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01-03 영업사원이나 보험설계사 등이 고객에게 보내는 새해인사, 생일축하, 기념일축하 문자 등 안부 문자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해당 문자의 문구내용보다는 그 문구에 담긴 의미가 홍보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 이를 전송하여야 함

01-04 홈페이지 가입자 등에게 보내는 뉴스레터(최근동향 및 소식 전달)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영리법인의 뉴스레터 자체가 자사 홍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 콘텐츠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광고성 정보에 해당
- 비영리법인의 경우 뉴스레터 내에 수익창출과 관련한 내용(미술관 유료전시 안내 등)이 있는 경우 광고성 정보에 해당
- 언론사에서 보내는 뉴스레터가 기사로 한정되어 있더라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될 수 있음

01-05 수신자가 비용을 지급하고 제공받는 정보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되나요?

- 수신자가 금전을 지급하고 제공받는 뉴스레터, 주식정보, 축산물 시세 등의 정보는 계약관계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01-06 교육시설에서 수강생들에게 휴강(휴무) 공지를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계약관계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01-07 쇼핑몰 등이 고객이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에 대한 안내 메일을 보내는 경우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구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

01-08 지점 이전, 업체명·도메인 주소 변경을 안내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계약관계에 있는 자(현재 물품 구매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 예외로 볼 수 있지만(ex:은행거래자에게 은행 지점 이전 안내), 단순히 온라인 회원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음

- 지점이전 안내에 은행 상품안내 내용 등이 들어가 있으면 광고성 정보가 될 수 있지만, 지점 이전 안내에 첨부된 간단한 인사말의 경우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 단 은행과 같이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 안내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ex) 할인마트 이전, 병원이전 안내 등

01-09 예금 만기도래 안내 문자, 예금 만기경과 문자, 대출 만기도래 안내 문자, 대출 만기경과 문자, 대출 이자납입일 또는 이자납입금액 및 입금계좌 안내 문자 등도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되나요?

- 계약 체결된 내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하기 위한 정보로 모두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01-10 고객이 요청한 경우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발송하는 정보(ex. 상담 후 행사나 제품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경우, 직업소개를 의뢰한 경우 등)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추가적인 요청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

01-11 정치인들이 발송하는 선거 운동관련 문자도 개인의 이미지 홍보이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여 스팸 관련 정보통신방법을 준수해야 되나요?

- 스팸 관련 정보통신방법의 규제 대상이 되려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되어야 하지만, 선거홍보 문자는 영리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준수할 필요 없음

01-12 설문조사(서비스 평가)를 하기 위해 보내는 정보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설문조사(서비스 평가)는 조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해당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한다거나 불만 사항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라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이외의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음

- 특히 특정 제품 선호도 조사, 소개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영리목적일 가진다고 보아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 설문응답을 유인하기 위하여 대가성으로 쿠폰을 지급하는 경우, 전송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와 무관한 쿠폰(ex:커피쿠폰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예외로 볼 수 있음

01-13 공무원 학원에서 합격자를 상대로 합격자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고 홍보하는 것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광고성 정보에 해당

01-14 애프터서비스나 계약기간, 멤버십 만료에 대한 안내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수신자가 사용하거나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 리콜, 안전, 보안 관련 정보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애프터서비스 정보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안내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하지만 이를 갱신하거나 재가입하라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

- 멤버십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고 유료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거래관계에 따른 계약사항 안내로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하지만 무료로 제공하는 멤버십의 만료 안내는 해당 멤버십에 대한 홍보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

01-15 콘도예약 확인 정보에 콘도 이용과 관련된 부대시설 정보를 같이 첨부하여 보내면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콘도예약 확인 문자는 “수신자와 체결한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 또는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하지만, 콘도와 관련된 부대시설 정보(노래방, 당구장 등)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

01-16 회사와 계약을 하고 회사의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혹은 대리점 등)에게 보내는 교육 독려, 제품 안내 문자 등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회사와 계약한 판매자에게 보내는 정보는 “계약 체결에 따른 확인,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01-17 포털사이트 카페를 운영하면서 스폰, 제휴 등으로 광고 배너를 올려 부수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경우 카페 등에서 카페 회원들에게 보내는 쪽지나 이메일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의 경우 친목도모 등을 위한 모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발송 정보의 성격을 보고 판단을 하여야 함

- 유료 서비스 제공이나 재화 판매를 위한 쪽지나 이메일의 경우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지만, 카페 소개나 초대, 행사안내 등의 경우에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01-18 비광고성 정보(요금고지서 등)를 전송하면서 수신동의 요청을 해도 되나요? 혹은 비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서 사업자 홈페이지 URL이나 홈페이지 링크배너 등을 넣어도 되나요?

- 수신동의 요청을 단독으로 보내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만 비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서 부수적으로 간단한 수신동의 요청문구를 넣는 경우 비광고성 정보에 해당
- 이용고객에게 이용 재화 및 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하면서 끝에 간단하게 수신동의 요청하는 것도 광고성 정보 예외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유선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간단하게 수신동의 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함
- 또한, 재화 판매 등 광고성 정보가 연결된 URL이나 배너를 넣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사업자의 홈페이지 URL이나 사업자 배너(로고)를 넣는 경우 비광고성 정보에 해당

02. 수신동의 (제50조제1항 본문)

02-01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각의 서비스 사이트(홈페이지)가 통합회원으로 운영 되더라도 광고전송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 통합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서비스(홈페이지)에 대해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하였다고 하여 다른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로 볼 수 없음
- 통합회원이라고 하더라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서비스나 브랜드에 대해 각각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약 명시적으로 모든 서비스와 브랜드 등을 모두 고지한 다음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모든 광고전송이 가능
- 수신거부도 동일하게 적용됨

02-02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품이 여러 개 일 경우, 한 제품에 대해 광고성 정보수신 동의를 받으면 다른 제품에도 동일하게 처리해도 되나요?

-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의 범위를 설정해도 동의받은 경우 해당 범위까지만 동의의 효력이 있음
- 만약 게임서비스를 하는 A회사가 통합 홈페이지(모든 게임이 올라와 있는 홈페이지)에서 수신 동의를 받은 경우 A회사가 운영하는 모든 게임 앱에 대해 수신동의를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특정 게임에 대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게임에 대해서만 수신동의를 되었다고 보아야 함

02-03 앱 푸시 알림의 허용(승인)/허용안함(승인거부) 설정이 “수신동의/거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나요?

- 앱 푸시 알림의 허용 여부는 해당 기기에 수신된 정보를 화면에 띄워주겠다는 의미일 뿐 광고성 정보 수신동위에 해당하지 않음

02-04 사업장(법인 등)을 인수할 때 고객 DB를 전달받게 되는데, 기존 광고수신 동의를 한 고객에게는 인수자가 광고를 전송할 수 있나요?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문제가 없다면 광고수신 동의에 의해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

ex) xx렌터카가 oo에게 인수되어 oo렌터카가 되더라도 oo렌터카는 xx렌터카에 수신동의한 고객에 렌터카 관련 광고 전송가능

02-05 A업체가 B업체를 대리하여 수신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하나요?

- A업체의 수신동의란에 “B업체가 전송하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로 표시하고 체크란을 두어 동의를 받는 경우 적절한 동의로 볼 수 있음

02-06 회사에 대해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대리점에 대한 광고가 가능하나요?

- 대리점이 회사 상품에 대한 광고는 가능하나 해당 대리점 자체에 대한 광고는 불가
- 대리점 자체에 대한 홍보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02-07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수신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1항제7호 동의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1항제7호 동의는 홍보/판매 권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동의에 해당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동의는 전송자가 보내는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해당하며 따라서 두 개의 동의는 구분 후 별개로 받아야 함
- 따라서 동의의 의사표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동의는 별도로 받아야 함

03. 수신동의 예외 (제50조제1항 단서)**03-01 기존 거래관계에서 회사(법인)의 직원이 고객의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연락처를 직접 수집한 자는 누가 되나요?**

- 거래 당사자가 회사(법인)인 경우 담당직원이 고객의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라도 연락처를 수집한 자는 해당 회사(법인)가 됨
- 따라서 담당직원이 바뀌어 다른 직원이 당해 고객에게 기존거래관계에 따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더라도 기존 거래관계가 적용됨

03-02 사업주체인 법인은 그대로 있고 대표만 바뀌는 경우 기존 거래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나요?

- 계약 당사자가 고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바뀌더라도 기존 거래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직원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거래관계가 그대로 유지됨

03-03 영업점을 인수하여 기존고객 정보를 획득한 경우 해당 고객들에게 광고를 전송할 수 있나요?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가 있어 이를 합법적으로 인수한 경우 기존에 고객들이 수신동의를 한 것은 그대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수신동의에 따른 광고성 정보 전송은 가능
- 만약 수신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 거래관계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거래관계를 통해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 정보를 넘겨받은 인수인은 기존 거래관계로 광고성 정보 전송은 불가

03-04 B TO B 거래를 한 후 기존 거래관계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는 회사 대표연락처로 보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자에게 보내야 하는 건가요? 담당직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직원에게 전송을 하여도 되나요?

- 기존 거래관계를 이용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는 기존 거래 시 수집하였던 연락처로만 전송이 가능함

03-05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기입한 고객의 번호로도 기존 거래관계에 따른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한가요?

- 배달 또는 물품 수령을 목적으로 번호를 전달하는 것과 달리 현금영수증은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의

거래를 위하여 수집한 번호가 아니며, 현금영수증 적립자 번호와 고객 번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됨

03-06 고객이 회원가입하면서 연락처를 입력한 후, 차후에 고객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거래관계가 존재하지만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회원가입시 연락처 등을 입력하여 고객이 재화나 서비스 구매할 때마다 불필요한 고객 정보 입력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도록 한 경우, 고객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기존에 입력하였던 연락처를 다시 입력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

03-07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법상 육성 TM(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수신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스팸관련 규정(표기의무사항 등)을 준수해야 되나요?

-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도 정보통신망법상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양법이 적용되는 상황이지만, 수신동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준 것임
- 스팸 관련 규정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든 법 규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배제하려면 명확한 배제규정을 두어야 함
- 따라서 육성 TM이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더라도 수신거부 시 광고전송 금지(제2항), 야간광고전송시 별도의 동의도 필요(제3항), 표기의무 사항 준수(제4항), 수신거부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제7항), 야간광고 전송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매 2년마다 수신동의여부를 확인(제8항)하여야 함

03-08 수신동의를 받고 TM을 하는 경우에도 수집출처를 고지해야 되나요?

- 수신동의를 받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제50조제1항본문)나 기존거래관계(제50조제1항1호)에 근거하여 하는 TM의 경우에는 수집출처를 고지할 필요가 없음
- 제50조제1항2호에 근거하여 수신동의 예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가 필요
- 제50조제1항2호에 근거하여 수신동의 예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가 필요. 단, 수신동의 입증 책임은 전송자에게 있음

04. 수신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 (제50조제2항)

04-01 수신거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는 언제 인가요?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를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부터는 광고를 전송하면 법 위반이 됨

04-02 가입한 (휴대)전화 명의자가 변경되어 가입자(서비스 이용자 혹은 수신동의자)가 아닌 현재의 (휴대)전화 명의자가 수신거부를 하는 경우 수신거부를 해야 되나요?

- 현재 휴대전화 명의자가 해당 휴대전화에 대해 수신거부를 요청한 경우 수신거부 처리를 하여야 함

04-03 수신자가 광고 문자에 적힌 무료수신거부 번호를 통해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송자(회사)에 대한 수신거부로 보아, 광고문자 외에 e-mail 등 다른 매체에 대한 수신동의도 철회한 것으로 봐야 되나요?

- 수신자의 특정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수신자로부터 매체를 구분하여 동의받은 경우에는 해당 매체를 통한 수신에 거부한 것으로 보고, 매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의받은 경우 전체 매체에 대해 거부를 한 것으로 봄

04-04 수신거부 기능을 제공할 때 로그인을 요구하면 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앱 푸시 광고를 전송할 때 이용자가 앱에서 로그아웃 되어있는 상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앱에 로그인하여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로그인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를 전송하는 것 자체가 수신자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전 수신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할 수 있음
- 만약, 로그인 여부와 무관하게 기기 자체에서 수신동의를 받아 기기 정보를 바탕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수신거부 시에도 로그인 없이 수신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하므로 로그인을 요구해선 안 됨

05. 야간수신동의 (제50조제3항)

05-01 야간(밤9시부터 아침8시까지)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송자가 발송한 시간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수신자에게 도달한 시간을 의미하나요?

- 입법 취지가 수신자의 수면권과 평온권을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봄
- 시스템 등의 문제(딜레이)로 전송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야간에 광고가 전송된 경우 이를 충분히 소명하여야 함

05-02 이메일 광고 전송은 야간에 수신동의가 없더라도 전송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이메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에게 사전에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며, 야간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추가의 동의(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 + 야간광고 전송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메일의 경우 법령에 따라 야간광고 전송 동의 예외이므로 야간 광고 전송에 대한 동의는 불필요

06. 표기의무 (제50조제4항)

06-01 전송자의 명칭에 업체명을 적어도 되나요?

- 전송자의 명칭은 수신자가 해당 전송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면 되며, 업체명 뿐만 아니라 서비스명을 사용하여도 됨
- 일반적인 수신자가 전송자를 식별할 수 없는 명칭(단축명칭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전송자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봄

06-02 처리결과 통지나 수신동의여부 확인 안내를 위하여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 (광고)를 붙여야 되나요?

- 해당 정보는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광고성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광고)를 붙이지 않아도 됨

06-03 광고 전송시 이미지로 하여 이미지 내에 표기의무 사항을 기입해서 전송해도 되나요?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기의무 사항인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방법은 이미지 내에 넣어서 전송하면 안됨
- 광고 내용은 이미지로 하여 전송하여도 되지만 정보통신망법에서 반드시 넣도록 하고 있는 문구는 텍스트로 표기하여야 함

06-04 발신번호와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에도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나요?

- 발신번호가 연락처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경우 즉 발신번호로 수신자가 전송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이 닿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내에 연락처를 별도로 기입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
- 만약 발신번호로 전송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허위의 번호인 경우에는 표기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됨

06-05 발신번호를 080 무료수신거부 번호로 넣어서 전송하는 경우 본문에 080번호를 기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 080 무료수신거부번호가 발신번호(회신번호)로 되어 있는 경우에 무료수신거부 방법을 안내만 하고 번호는 별도로 넣지 않아도 되며, '무료수신거부 : 통화'로 명시하면 됨

06-06 문자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제목과 본문 중 (광고)는 어디에 적나요?

- 법에서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 단말기 기종별로 제목과 본문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수신자가 (광고) 표시를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제목과 본문에 모두 넣어야 함

06-07 문자광고 전송시 (광고),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를 항상 광고 앞에 나오도록 명시해야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6에서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를 표시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음
- 따라서 (광고),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는 광고 본문 앞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함

06-08 음성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에서 “광고를 의미하는 음성”을 안내하라는 것이 무엇 인가요?

- 수신자가 광고, 홍보, 판매 등의 목적으로 전화가 왔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본 전화는 00의 음성광고입니다”와 같이 안내를 하는 것을 의미함

06-09 육성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 안내서에 나와 있는 예시와 같이 080 무료 수신거부 번호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상담원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라고 안내하는 경우에도 수신거부 방법을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안내원이 육성으로 음성광고를 하면서 수신거부를 하고 싶은 경우 본인에게 직접 이야기 해달라고 먼저 수신거부방법을 안내 한 후에 광고내용을 안내하는 경우 별도의 무료수신거부번호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수신거부방법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

06-10 홈페이지 접속시 팝업창이 뜨는 경우 팝업창도 표기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되나요?

- 고객이 직접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경우 그 홈페이지 상 팝업창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중에 보게 되는 화면으로 전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신동의 및 표기 의무사항 등을 준수할 의무는 없음

06-11 이메일 광고 전송 시 수신거부 방법을 한글 및 영어로 둘 다 안내해야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른 별표6에서 이메일 광고 전송 시 수신거부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한글 및 영어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표기하여 안내하여야 함

06-12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광고하는 경우 (광고)와 수신거부등의 방법을 한글로 명시해야 되나요?

-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 (광고)를 표기할 필요 없이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발송을 하면됨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국외에 거주하는 내국인에게 전송하는 경우에는 (광고) 등 표기의무를 준수하여 전송하여야 함

06-13 이메일 광고 전송시 [수신거부]를 클릭할 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도록 해도 되나요?

- 로그인을 요구하는 것은 안되지만 이메일 수신거부시 해당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정보만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06-14 이메일의 경우 수신거부 버튼을 운영하지 않고 무료수신거부 번호를 기입해도 표기 의무사항을 충족하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4항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규정된 시행령 별표6을 보면 전자우편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고 규정
- 수신거부는 기본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에서 쉽게 수신거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이메일의 경우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안내서에 나와 있는 방식과 같은 수신거부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무료수신거부 080번호 등을 이용하여 수신거부를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06-15 이메일 광고 전송시 연락처로 이메일 주소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메일주소를 직접 표기하지 않고 “이메일로 문의하기”와 같이 표기 후 이메일 문의 창으로 링크를 걸어두어도 되나요?

- 이메일 주소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이메일을 작성하여 전송자에게 회신이 가능한 별도의 표기(1:1 이메일 상담창 등)를 둔 경우 처럼 이메일로 회신이 가능한 방식을 표기한 경우 이메일 연락처를 표기한 것으로 봄

06-16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를 넣어도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6을 보면 이메일 광고 전송시 연락처의 예시로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로 되어 있지만 모사전송 및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는 전화번호 또는 주소로 되어 있음
- 따라서 전자우편을 제외하고 다른 매체에서는 연락처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없음

06-17 **080 무료수신거부 번호로 전화를 하는 경우 상담원과 24시간 연결되도록 운영해야 되나요?**

- 일반적인 영업시간 동안만 상담원 연결로 운영하여도 됨

06-18 **광고성 정보 수신자가 전송자가 제공한 방식으로 수신거부 시 수신거부자 본인인증 절차를 넣는 경우 법에 위반 되나요?**

- 수신거부 방식 제공시 수신거부방법에 대해 본인인증 절차를 넣는 것은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음

06-19 **앱 푸시 광고에도 표기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되나요?**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광고를 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음성 외의 광고 전송 시 명시사항과 방법을 준수해야 함

07. 처리결과 통지 (제50조제7항)**07-01** **처리결과 통지를 14일 이내라고 하였는데 가령 1월 1일 오후 3시에 동의철회 하였다면 1월 15일 오후 3시까지 통지해야 되나요?**

- 14일 이내는 의사표시를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월 15일 24시까지임

07-02 **처리결과 통지 시 날짜를 “금일” 또는 “오늘” 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 안내사항에 날짜가 필요한 이유는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의사표시를 언제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임
- “금일” 등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 차후에 이를 확인할 때 해당 날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금일로 안내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음

07-03 **수신거부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어떤 형태로 안내해야 하나요?**

- 수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 할 때 수신자가 차후에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녹음, 복사, 캡처 등이 가능한 형태로 통지하여야 함
- 동의를 받은 후 처리결과를 팝업 형태로 띄워서 통지하는 것도 가능

07-04 **고객이 현장에서(오프라인에서) 주문 등록 등과 함께 수신동의를 체크한 경우 회사는 이를 시스템(온라인)에 등록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는데, 시스템 반영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수신동의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발송하면 되나요?**

- 수신동의 처리결과 통지의 기산점은 수신자가 의사표시를 한 때이며 따라서 수신동의를 체크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07-05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서면 회원가입(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및 계약을 한 고객에게 해당 회원가입 및 계약 상태에 대한 확인을 하는 해피콜을 하면서 수신동의 처리결과 통지도 같이 하여도 되나요?**

- 가능함

07-06 온라인에서 가입 후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여 수신거부를 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고 구두로 완료되었음을 고지하고 있는데, 대면 업무이다 보니 증빙자료가 따로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처리 후 결과를 구두로 처리되었음을 알려도 되나요?

- 현장에서 구두로 즉시 안내하여도 되지만 해당 방법으로는 차후에 고객이 처리결과를 통지 받지 못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할 시에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명 등 증빙을 남겨야 할 필요가 있음

07-07 수신동의 처리결과를 문자로 통지하는 경우 문자 내에 표기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광고성 정보를 추가하여 전송하여도 되나요?

- 처리결과 통지는 법에서 반드시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광고) 표기를 하여 필터링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결과 통지만 내용으로 하여 전송해야 함

07-08 육성으로 수신거부를 하는 경우 수신거부를 처리한 후 곧바로 상담원이 수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도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에서 요구하는 1)전송자의 명칭, 2)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 3)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4) 처리 결과를 모두 포함하여 안내를 하면 가능함

07-09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수신동의를 받는 화면에서 저장되었음이 나올 때 수신동의 처리결과를 팝업을 띄워 알려주는 것도 가능하나요?

- 정보통신망법에서 요구하는 1)전송자의 명칭, 2)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 3)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4) 처리 결과를 모두 포함하여 안내를 하면 가능함

07-10 홈페이지 회원 탈퇴를 한 고객의 경우 개인정보가 삭제되어 광고를 진행하지 않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탈퇴 시 수신거부 처리결과 통지를 해야 되나요?

(명시적 수신거부는 하지 않았으나, 탈퇴로 인하여 광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처리결과 통지는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표시하였을 경우 하는 회신으로, 이는 수신 거부를 하였음에도 재차 광고가 전송된 경우 수신거부 하였음을 차후에 증명을 할 수 있는 증적 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임
- 따라서 탈퇴로 인한 수신동의 철회 간주의 경우 별도로 처리결과를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됨

08.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 (제50조제8항)

08-01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는 모든 회원들에게 해야 되나요? 또한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 후 수신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란,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에 대한 수신에 동의한 경우 수신자에게 수신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한번씩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수신 동의자에게 안내하여 주는 것을 말함
- 따라서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는 회원 중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한 회원에게만 하면 됨
- 수신동의 했다는 사실을 안내하라는 것이지 수신동의를 다시 받으라는 의미가 아님
- 또한, 수신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그 해석은 전송자가 안내한 방식에 따라 다름. 즉, 전송자가 수신자에게 광고수신 유지 의사표시 방법을 안내한 경우 수신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고, 반대로 동의철회 의사표시 방법을 안내하였으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동의가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08-02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기간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도 되나요?

- 2년 내에 받는 것이라면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할 수 있음

08-03 회원이 로그인 했을 때 비밀번호 변경 안내와 같이 로그인 시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안내하는 방식도 가능하나요?

- 이 경우, 수신자가 로그인을 하기 전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신자에게 안내 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음

08-04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서 정보 하단에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 문구를 넣어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의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는 법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으로, 광고성 정보와 함께 안내할 경우 (광고) 표기로 인해 광고성 정보 수신을 필터링한 고객에게는 해당 고지가 수신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와 별도로 안내 하여야 함

08-05 수신동의 여부 확인에 대해 이메일로 안내하고 있는데, 만약 이용자가 기입한 이메일이 현재 사용하지 않는 주소이라면 이용자가 확인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송자는 법적 의무를 다한 것에 해당 되나요?

- 전송자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 메일을 정상적으로 발송하였다면 수신자에게 수신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였다고 봄

08-06 이용자가 여러 매체로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경우, 그 중 광고성 정보 수신을 거부한 매체로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해도 되나요?

- 법률상으로는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는 광고성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안내성 정보와 동일하게 보유한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매체를 선택하여 전송할 수 있음
- 다만, 수신자의 거부 의사표시의 범위(광고성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도 거부한 것일 수 있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신자가 동의한 매체로 전송하는 것을 권장함

08-07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 시 SMS, 이메일 등 전자적 매체 외에 고객과 직접 대면하여 안내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정보통신망법상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 방법에 대해 특별한 방식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직접 대면하여 안내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서면 등의 증빙자료를 남겨두어야 함

08-08 고객이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하였으나, 기존 거래관계가 지속적으로 성립하는 경우 기존 거래관계로 광고를 전송하는 것으로 보고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2년 내에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거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해야 함

08-09 고객이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하였으나, 고객과의 거래가 종료되어 향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을 예정임에도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해야 되나요?

- 기본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으면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음. 다만,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혹은 광고전송 계획이 없어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이력을 파기)한 경우 안내하지 않아도 됨

08-10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 시,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 시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안내

하도록 되어 있지만 별도로 특별한 방식이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모바일 앱에서 수신거부 설정 방법을 제공하거나, 이메일 광고 전송시 제공하는 수신거부 방법(기술적 조치)나 080 수신거부 번호, 홈페이지 안내정보 설정 변경에서 가능함을 안내하여도 됨
- 단, 이용자에게 동의철회가 어렵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08-11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 시, 이용자가 수신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되나요?

- 수신동의 철회 시 제50조제7항에 규정된 처리결과 통지를 해야 함

08-12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 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나 요금 고지서 등에 포함하거나, 이용자가 해당 정보를 열람할 때 팝업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도 되나요?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나 요금 고지서 등에 포함하여 안내하는 경우 수신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민원 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신동의 여부는 별도로 안내하여야 함
- 우편 고지서에 동봉하여 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지서와 별개의 문서로 하여(별지 사용) 보내야 함

08-13 A회사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마케팅 활용 동의(제3자 제공 포함) 및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모두 받아 B회사에게 제공한 경우,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하여야 하는 책임은 어느 회사에 있나요?

- A회사가 광고전송 의사 없이 단순히 B회사의 수신동의를 대신 받아준 경우(고객에게 A회사에 대한 광고성 정보수신동의는 받지 않음)에는 B회사에게만 안내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A회사에서도 광고전송을 위해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A회사, B회사 모두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 의무가 있음

08-14 다수의 서비스에 대해 통합회원으로 관리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별로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해야 되나요?

- 각각의 서비스별로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도 각각 별도로 해야 하지만, 수신동의가 되어 있는 모든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고지 후 한번에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하는 것도 가능, 이 경우 일괄 철회 기능도 제공하여야 함

08-15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에 동의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한 시점에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안내한 경우, 다음 번 안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예: '25년 1월 1일 수신동의한 고객에게 '26년 6월 30일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안내한 경우, 다음번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는 '28년 6월 29일 이전까지 하면 되는지?)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3에 보면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확인 안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번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는 2028년 6월 29일 이전까지가 아니라 202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하면 됨

08-16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후 2년 내 철회와 재동의를 반복하는 경우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예: '25년 1월 1일 수신동의 → '26년 4월 3일 수신거부 → '26년 4월 5일 수신동의 → '26년 6월 1일 수신거부 → '26년 6월 3일 동의한 경우)

- 최종 수신동의일을 기준으로 수신동의 여부를 안내하면 됨(2028년 6월 2일까지 안내). 다만, 수신동의, 수신거부 의사표시가 있을 때마다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08-17 이용자가 매체별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와 철회 시점을 달리 한 경우, 수신동의 여부 확인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예: '25년 1월 1일 회원가입과 함께 전화·이메일·문자에 대해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 '26년 6월 1일 전화에 대해 수신동의 철회 → '26년 8월 1일 앱푸시 광고 수신을 동의한 경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는 '27년 12월 31일 이전 인지 아니면 '28년 7월 31일 이전 인지)

- 매체별로 동의와 철회 시점이 다른 경우, 매체별로 2년 내 수신동의 여부를 안내해야 함. 다만, 하나의 전송매체를 통해 수신동의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전송매체별 동의 날짜 및 사실을 모두 명시하여야 하며, 수신동의 여부 안내 기한이 가장 일찍 도래하는 전송매체를 기준으로 안내하여야 함
- 위 사례에서 각각 안내하려면 이메일과 문자는 2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앱 푸시는 28년 7월 31일까지 안내하여야 하며, 하나의 매체로 안내하려면 둘 중에 일찍 도래하는 2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안내하여야 합니다.

09. 게시판 광고 (제50조의7)**09-01** 게시판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게시판에 중고거래 등 물품을 사고 팔수 있는 게시판을 둔 경우에 해당 게시판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동의를 한 게시판으로 볼 수 있나요?

- 해당 게시판은 게시판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사전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09-02 동호회 카페 등에서 물건을 판매하려고 광고를 올리려면 운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판에 올리려면 운영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09-03 제50조의7제1항 단서에서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이란 어떤 게시판을 말하나요?

- 로그인을 하지 않거나 별도의 인증과정 없이 바로 누구나 게시글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말함

09-04 본인의 SNS에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면 친구들에게 광고성 정보가 보이게 되는데 법 위반 소지가 있나요?

- 본인의 SNS에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 친구들에게 해당 게시글이 보이게 되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중에 보게 되는 화면으로 전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